

제29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3. 7.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3년 3월 7일  
전문위원 권오숙

##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2023 - 31

나. 발의자: 김순옥 의원 외 7명

다. 발의일자: 2023년 2월 24일

라. 회부일자: 2023년 2월 27일

## 2. 제안이유

맞춤법 규정에 맞도록 띠어쓰기 등의 조문을 정비하고,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규정과 청년의 국제 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 규정, 청년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하여 표창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맞춤법 규정에 맞게 띠어쓰기 등 조문 정비

- 고려 하여야 ⇒ 고려하여야
- 「청년기본법」 제8조 ⇒ 「청년기본법」 제8조

- 수립・시행 ⇒ 수립・시행
  -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나.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민간전문가 활용을 규정함  
(안 제10조 신설)
- 다. 청년의 국제 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규정함 (안 제22조 신설)
- 라. 청년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표창을 규정함 (안 제25조 신설)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청년기본법」 제4조, 제24조, 제26조
  - 2)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 제2조, 제5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편성
- 다. 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 라. 기 타: 입법예고(2023. 2. 27. ~ 3. 6.)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가. 개정취지

- 보다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청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문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 나. 주요 개정내용

- 안 제10조에서 관계 전문가·법인·단체 등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청년 정책 추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제10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관계 전문가·법인·단체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하는 경우에는 자문료 등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안 제22조에서는 「청년기본법」 제24조<sup>1)</sup>에서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마련으로 명시된 청년 국제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하였음

**제22조(청년의 국제협력)** 구청장은 청년의 국제 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안 제25조에서는 「청년기본법」 제26조<sup>2)</sup>에 근거하여, 청년 정책 및 발전에 공헌한 대상자에 대한 표창 규정을 신설함

**제25조(표창)**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 및 권리증진, 청년발전, 우수 의제 발굴 및 제안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그리고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20조에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어문 규정을 정비하였음

- 
- 1) 「청년기본법」 제24조(청년 국제협력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청년기본법」 제26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다. 종합의견

-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과 권리증진에 기여하고자 2017년 제정된 것으로
- 본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까지 가중되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보다 도움이 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가 되는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어문 규정 등을 정비하는 것임
- 우리 구 청년인구<sup>3)</sup>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184,580명으로, 전체 인구의 32.4%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청년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된다면 이는 우리 구 발전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 체계나 자구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신설되는 조항에 대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관심과 재원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통한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3) 청년 인구현황: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 따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전체 568,805명 중 184,580명 [2023. 1. 1. 기준]

## □ 청년기본법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24조(청년 국제협력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6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2. 구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소속부서 및 기관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구민화합 등 구정 및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